##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23

발의연월일: 2021. 8. 5.

발 의 자:김영주·강준현·김교흥

김병기 · 노웅래 · 서삼석

신영대 · 윤관석 · 이용빈

이원욱 • 한준호 • 허 영

허종식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경기단체의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라 함)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약속하는 행위 등(이하 "금지행위"라 함)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승부조작을 스포츠 4대악 중 하나로 선정해 관리해 왔지만 승부조작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있고 승부조작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승부조작과 관련된 전문체육선수등에 대하여 는 영구제명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승부조작 등의 스포츠비 리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에 승부조작 등 스포츠비리 예방을 위한 연구를 포함하고,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 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금지행위와 관련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및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스포츠계에서 승부조작을 근절하고 체육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임직원"을 "임직원(이하 "전문쳬육선수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을 "전문체육선수등은"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47조제1호, 제 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및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승부조작 등 스포츠비리 예방을 위한 연구

제45조의2제1항제1호 중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을 "전문체육선수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1호 중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을 "전문체육선수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을 "전문체육선수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	①
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u>임직원</u> 은 운동경기	<u>임직원(이하 "전문</u>
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u> 체육선수등"이라 한다)</u>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	
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	② 전문체육선수등은
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	
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	
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	
니 된다.	<u>.</u>
<u>&lt;신 설&gt;</u>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대한체육
	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
	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
	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
	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
	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

-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② (생략)
  -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 6. (생 략) <u><신 설></u>
  - 7. (생략)
  - ④ ~ ⑧ (생 략)
-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진흥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 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 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 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
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 <u></u>
전 및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
립) ①・② (현행과 같음)	
3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승부조작 등 스포츠비	리
예방을 위한 연구	
7.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임직원

2. ~ 5. (생략)

② (생략)

-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 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 2. (생략)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 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 수는 제외한다) 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 3. ~ 6.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1
<u>전문체육선</u>
수등(「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u>11   Ca   17</u>
9 (처체되 가야)
2. (현행과 같음)
제48조(법칙)

1. (현행과 같음)

\_\_\_\_\_\_

-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 2. -----전문체 육선수등(「초·중등교육법\_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
  - 3. ~ 6. (현행과 같음)